

연구용역 과업지시서			
건 명	AI 시장 실태조사 연구		
용역기간	계약일로부터 6개월		
담 당 과	시장감시정책과	담당자 / 연락 전화	김하리 서기관 /044-200-4329
과업내용	1. 연구목적 ☐ AI(Artificial Intelligence) 기술은 이미 일상·산업·시장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, 그 영향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○ 생산성 향상, 서비스 창출 등 AI 기술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 불공정성, 불투명성, 시장 독점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☐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AI 시장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○ AI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·소비자 이슈를 발굴·분석하여 사전에 제시함으로써,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AI 모델과 그 응용기술이 경쟁·소비자 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지원 2. 연구내용 ☐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현황, 거래구조 등 실태 파악 ○ 생성형 AI 시장의 주요 사업·서비스* 유형 및 내용, 유형별 참여사업자 등 전반적 시장현황 및 인접시장 현황 검토 * AI 기반모델(Foundation Model), 어플리케이션, 모델허브, 클라우드 컴퓨팅, 하드웨어, 데이터 등 ○ AI 시장 참여자 간 통상적 거래방식 및 조건, AI 시장 참여자와 인접 시장 참여자 간 거래방식 및 조건, ○ 생성형 AI 사업자의 거래약관 규정 형태·내용 및 데이터 이용 관련 사항 파악		

□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·소비자 이슈 분석

○ 생성형 AI 시장 참여자들의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행태적 경쟁제한·소비자 이슈 발굴 및 분석

○ AI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 진입 저해, 경쟁 제한 등 구조적 요인 존재여부 확인

* (예시) ▲알고리즘 담합, ▲허위·과장·기만적 광고, ▲콘텐츠 제공자들에 대한 불이익 제공, ▲시장지배적 지위 고착화, ▲인접 시장의 시장지배력 이전, ▲先 개방 後 이용제한, ▲혁신기업 인수 등

□ 해외 주요 경쟁당국 정책 동향 연구

○ 미국, 영국, 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AI 시장 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 사례에 대한 분석

* 미국 FTC AI 시장 보고서, 영국 CMA AI 기반모델 보고서 등

○ 주요 국가의 경쟁·소비자 이슈 대응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국내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 검토

□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경쟁당국의 정책 방향 검토

○ 생성형 AI 시장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쟁압력이 유지되며, 소비자 이익이 보호되는 시장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

3. 연구방법

□ 생성형 AI 시장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 분석

※ 경쟁법 및 AI 시장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거나, 그에 준하는 자문 체계를 설계할 필요

○ AI 사업자 대상의 시장현황 및 거래구조 관련 서면실태조사
* 자료를 분석하고, 이해관계자 대상 후속 설문조사 등 진행

* 공정거래법 제87조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예정

	□ 생성형 AI 시장과 관련한 출판물, 논문, 보고서 등 국내외 문헌 조사 □ 해외 경쟁당국의 분석 내용 및 법 집행사례 파악 ○ 국내 시장상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□ AI 시장 참여자, 학계,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의견청취 절차 진행 ○ 필요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 사례 등 파악 4. 예상 연구결과물(필수) □ 국내 생성형 AI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 구조 관련 서면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 □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제한·소비자 이슈 분석 및 유형화 □ 국내외 문헌 조사, 해외 경쟁당국 사례 분석 및 국내 시장 상황과의 비교 연구 □ 경쟁·소비자 친화적 시장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○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는 AI 시장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검토
성과물 제출	○ 중간보고서: 100p 이상, 계약일로부터 4개월까지 5부 및 전자문서 ○ 최종보고서: 150p 이상,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20부 및 전자문서
비고	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 과정 중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